

문서번호	주택과-1023 15	★주무관	주거환경관리팀 장	주택과장	도시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5. 11. 20.	최철민	김경수	김남규	代김남규	하철승	11/20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이기호			
			주무관	송수연			

**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 
조례 일부개정 계획**

2015. 11. 20.

**강 북 구  
(주 택 과)**

#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

「주택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

## I 근거

- 「주택법」 제43조(관리주체 등)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## II 개정사유

-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III 주요 개정내용

-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함(안 제1조)
- 사업의 보고, 조사, 검사, 정산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(안 제8조)

**IV****추진일정**

- 2015. 11월 : 구청장 방침 및 입법예고(20일이상)
- 2015. 12월 : 조례규칙심의회 상정
- 2016. 1월 : 구의회 상정 및 공포

**V****별첨**

-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